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성별 여성

(나이) 54세

직종)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는 1979년 05월 2일 ○에 입사하여 약 29년 3개월간 반도체 관련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부터 △. □까지 같은 현장이지만 운영회사만 바뀌었다. 근로자는 ㅁ에서 재직 중인 2016년 2월 15일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각종 수지의 열분해 산물에서 나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과 전자파, 스트 레스, 교대근무 등에 영향을 받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 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년 5월 3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 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화경

근로자는 1979년 5월 2일(당시 19세)에 ○에 입사한 이후 △ 및 사내협력업체인 □ 소속으로 반도체 소자 생산라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2월 상병 발병까지 약 29년 3개월간 3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사업장은 운영회사만 바뀌며 계속 유지되었 다. 1979년부터 1991년까지(12년 7개월) ○에서 트림폼공정에서 육안검사하는 업무 를 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8년까지(4년 9개월)에는 PCB기팎에 부품을 핀셋으로 올려놓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8년에서 약 2000년까지는 △에서 약 2년간 반도체 소자의 도금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9년 11 개월간 조립공정을 마친 칩의 자동화 장비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Test공정에서 근무 하였다. 근로자가 근무한 테스트 공정의 각 설비는 모두 배기시설이 연결되어 있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기덕트 평면도에서도 모든 설비에 배관이 있는 걸 확인하였다. 평소 작업복은 방진복, 장갑 정도였으며, COVID-19 발생 이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 였다.

1. 암질환 가. 림프조혈기계암 42 43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6년 2월 고열과 두통, 사지 위약감을 주소로 의원에 방문하였다. 진료 시수행한 혈액검사 상 혈색소(Hb)가 5.3mg/dl으로 매우 낮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월 17일 입원하여 수행한 골수검사결과 전구세포(Blast cell) 93.8%, CD33(+), CD117(+), MPO(-)로 급성골수성백혈병(M0) 진단 받았으며 골수검체의 염색체 검사 상 비정상 핵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2월 18일부터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완전 관해 소견 보였으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하여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암 공고치료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4월 21일 경 재발하여 항암 관해유도치료를 받았다. 이후로 2017년 8월 9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수행하였고, 이식편 대 숙주 거부반응으로 입원치료 하며 경과관찰 중 재발 소견보여 치료중이다. 갑상선염, 역류성 식도염이외 특이 질환 없었으며,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았고 가족력으로 어머니 유방암 외에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기 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복용이력은 없었고, 큰 체중 변화나 전신질환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만 54세 되던 2016년 2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79년 5월 2일(당시 19세)에 ○에 입사한 이후 △ 및 사내협력업체인 □ 소속으로 2016년 2월까지 약 29년 3개월간 반도체 소자 생산라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한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그 노출수준은 매우 낮아 직업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된 집단 역학조사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원인물질은 확인되지 않지만 백혈병의 발병률이 30%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 근로자는 그러한 환경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원인불명의 요인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끝.